

제 935 호
1982.10.28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김 선 배
편집 : 공 부 원 권 영 호
전화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25-6090

시 보

차 례

○ 고 시

제 434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지적승인	3
제 435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변경시행허가변경	5
제 436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5
제 437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

<이면계속>

공 발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449호	: 건설업 (전문공사업) 면허취소공고 6
	제	450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7
	제	451호	: 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9
	제	454호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업소정지처분취소공고 10
	제	455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공고 10

◎ 사 령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434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지적 승인 고시

1. 서울시고시 제 50 호 (82. 2. 3) 및
서울시고시 제 196 호 (82. 5. 14) 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521 호
(81. 12. 31)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
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련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에,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0. 26.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신설	중학교	도봉구 도봉동	254 일대	13.018
·	국민학교	· ·	585 ·	10.149 (증 142 ㎡)
·	·	· ·	608-22 ·	10.165
·	·	· ·	625-29 ·	5.648 (감 170 ㎡)
·	고등학교	· 상계동	195-9 ·	20.138 (감 672 ㎡)
·	중학교	· ·	1179-9 ·	18.169
·	국민학교	· ·	530-4 ·	19.346
·	중학교	· ·	538-2 ·	18.146
·	국민학교	· 중계동	77 ·	14.251
·	·	· ·	118 ·	21.305 (감 1,472 ㎡)
·	국·중학교	· 하계동	산 16-6 ·	46.566
·	고등학교	· 방학동	723-25 ·	29.455
·	국민학교	· 쌍문동	468 ·	20.857 (감 366 ㎡)
·	·	· 공릉동	539-1 ·	14.347
·	·	· 월계동	12-2 ·	11.504

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m)	연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2류	8	135	도봉구도봉동 556	도봉구도봉동 572-17	폭원 2m 확장
기정	소로	2류	8	24	" " 556-56	" " 556-56	
변경	소로	2류	8	24	" " 556-56	" " 556-56	폐지
기정	소로	3류	6	10	" " 572-17	" " 572-17	
변경	소로	3류	6	10	" " 572-17	" " 572-17	폐지
기정	소로	3류	6	78	" " 579-8	" " 578-7	
변경	소로	3류	6	78	" " 579-8	" " 578-7	폐지
기정	소로	3류	6	125	" " 579-8	" " 585-2	
변경	소로	3류	6	125	" " 579-8	" " 585-2	폐지
신설	소로	3류	6	78	" " 578-5	" " 579-7	
기정	소로	2류	8	58	" " 624-106	" " 624-108	
변경	소로	2류	8	58	" " 624-106	" " 624-108	폐지
신설	소로	3류	6	120	" " 625-23	" " 624-108	
기정	소로	1류	10	168	" 상계동 195-5	" 상계동 198-23	
변경	소로	1류	10	168	" " 195-5	" " 198-23	폐지
신설	소로	3류	6	200	" 쌍문동 431-3	" 쌍문동산 281-1	
기정	소로	3류	6	190	" " 431-4	" " 466	
변경	소로	3류	6	190	" " 431-4	" " 466	폐지
기정	소로	3류	6	180	" " 산278-1	" " 470-18	
변경	소로	3류	6	180	" " 산278-1	" " 470-18	폐지
기정	소로	3류	6	160	" " 431-3	" " 469-1	
변경	소로	3류	6	160	" " 431-3	" " 469-1	폐지
신설	소로	2류	8	200	" 중계동 107-8	" 중계동 107-25	

◎서울특별시고시제 345 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허가변경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06 호 (82. 8. 6) 로 도시계획사업(시장) 변경시행 허가한 신동시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기 연장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1 호 (81. 12. 31) 권한위임사항의 내부위임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시장) 변경시행허가 변경(공기연장)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0. 27

서울특별시

- 가. 사업시행자
영등포구 신길동 259-4 외 5 필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도시계획사업(시장)
신동시장 현대화 신축공사
- 다. 사업규모 및 면적
토지면적 : 937 ㎡
건축면적 : 463.60 ㎡
(연면적 : 1,390.6 ㎡)

- 라.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 259-4
신동시장(주) 대표이사 괴정환
- 마. 사업기간
변경전 : 1982.8.19 ~ 1983.2.18
변경후 : 1982.8.19 ~ 1983.8.18
-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영락사. 설계도면 : 별첨 (도면성락)

◎서울특별시고시제 436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 10. 28

서울특별시

-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 2. 사업주체 : 영등포구여의도동 1-142 (주)라이프 대표 조대석
- 3.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규모
가. 위치 : 영등포구문래동 3 가 76 -1
나. 면적 : 17,792.36 ㎡
다. 규모 : 아파트 15 층 2 동 270 세대
상가 2 층 1 동외 부대부리시설
- 4. 사업시행기간 : 82.10. ~ 83.12.31

◎서울특별시고시제 437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납동 147 번지 1 호의 3 필지상에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 10. 29.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주) 유천건설 대표. 김 성 복
3.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규모
가.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납동 157-1 의 3 필지
나. 면적: 8953.14 ㎡
다. 규모: 연립주택 3 층 5 동 114 세대
기타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1982. 10 ~ 1983. 4. 30
5.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소로			6	108	강동구 풍납동 147-2	강동구 풍납동 149-19	
채지	소로			6	108	강동구 풍납동 147-2	강동구 풍납동 149-19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448 호

건설업 (전문공사업) 면허취소공고

1982. 10. 25.

다음 업체는 국세징수법 제 7 조 제 4 항 및 건설업법 제 38 조 제 1 항 제 18 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전문공사업) 면허취소처분을 하였기 공고한다.

서울특별시장

다		음				
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취소일자	취소사유	근거법규
서울12-19 충남15-6	대일 특수건설 (주)	김특이	동작구흑석 9-27	82.10.22	국세채납	건설업법 제 38조 제1항 제18호 및 국세징수법 제7조 제4 항

◎서울특별시공고제 45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2 호 (80. 2. 24) 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동작국교 진입로포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고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가. 공 랑 장 소
동작구청 토목과
- 나. 공 랑 기 간

1982. 10. 27 ~ 1982. 11. 9
(14 일간)

1982. 10.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시행지
동작구사당동 44 의 2-46 의 9 간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동작국교진입로
포장공사
3. 사업의규모 : 도로포장 B=6. L=65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일간일 1982.11.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적지목 및 소유권 권리명세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의 3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 성명 : 별첨
8.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
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소재지	지목	지적	수용면적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주소	성명		
사당동 46-9	대지	104 평	104 평	종로구수송동 68-2	이종익	근저당 : 주식회사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 9-1 (사당동지점)	
" 44-2	"	53 "	3 "	동작구사당동 44-2	이정옥		
건 물							
소재지	구조	용도	건축면적	수용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주소	성명	
사당동 46-2	세멘부력조	주택	9평 3홉		동작구사당동 46-2	양희성	
	세멘와습 부속				" 46-2	양희성	
사당동 45-2	세멘부력조	주택	3평 3홉		" 45-2	임동화	
	세멘트와습				" 45-3	오희창	
사당동 45-3	연와조	"	13.86		" 45-1	한상진	
	세멘와습				" 46-11	엄광희	
사당동 46-11	연와조	"	22.01		" 46-13	정건성	
	세멘와습		(지) 3.9		" 46-4	김치범	
사당동 46-13	연와조	"	21.1				
	병옥개		(지) 4.53				
사당동 46-4	세멘부력조	"	12.62				
	세멘와습						

건 물							
소재지	구 조	용도	건축면적 (평)	수용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주 소	성 명	
사당동 44-2	주 택		1층29.22 2층17.61		동작구사당동 44-2	이정옥	근저당 : 주식회사 국민은행 남대문로 2가 9-1 (사당동지점)
사당동 46-10	세멘부력조 세멘와습	주택	11.93		동작구사당동 46-10	이종성	

◎서울특별시공고제 451 호

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조 규정에 의거
K.S 정지처분한 바 있는 아래 사항

에 대하여 등 처분을 해제하였기 인
법 시행규칙 제 21조 규정에 준하
이를 공고한다.

1982. 10. 26.

서울특별시공

허가번호	1930	1986	1945	2254
가일자	80.1.14	80.2.12	80.1.21	80.12.27
제조업체명	신일공업사	영남금속공업사	국일금속공업사	대복금속공업사
대표자	이정수	권태정	권태산	오광진
소재지	영등포구독산동 612-3	영등포구문래동 5가 19-3	강서구신정 1동 596-20	영등포구당산동 4가 33-1
규격번호	KSB 2331	과 동	과 동	과 동
품명	수도꼭지	·	·	·
종류및등급	가로꼭지 φ15	·	·	방온수용합금
처분일자	82.7.19	·	·	과 동
해제일자	82.10.18	·	·	·

◎서울특별시공고제 454 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업소
정지처분취소공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0조 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업소의 시공업 정지처분
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한다.

1982. 10. 27.

서울특별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정지처분취소

지정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정지처분내용	취소처분사유및내용
성 동 제 101 호	한국난방	성동구구의동 251-31	오구용	영업정지 2개월 (82. 8. 27 ~ 10. 26)	소원재결결과 시공업정지처분취소

◎서울특별시공고제 455 호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수당지급공고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지급규정
제 5 조에 의하여 1982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지급에 관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2. 10. 30
서울특별시

1. 수당지급 신청대상자
2 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
방공무원과 소방정감이하의 소방공

무원으로서 수당지급 공고일 현재
20 년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가. 정년퇴직일 전 1 년이상 5 년
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자.
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자
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
일전 5 년초과 10 년이내인 자.

2. 수당지급대상인원 : 351 명

3. 수당지급 신청
가. 신청기간 : 1982. 11. 30 일 ~
1982. 12. 6 일
나. 신청절차
수당지급 희망자는 신청기간내
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4.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지급
 서울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급한다.

5. 수당지급대상자의 사직원 제출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 수당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사 령

◎ 1982년 10월 25일자 령제 546호

강 서 구 목 1 동 김 광 수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파견근무를 명함 (82. 10. 25 ~ 83. 4. 24)

강 동 구 방 이 동 장 계 호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파견근무를 명함 (82. 10. 25 ~ 83. 4. 24)

◎ 1982년 10월 27일자 령제 547호

환 경 녹 지 국 환 경 과 주 의 범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82년 10월 29일자 령제 548호

도 봉 구 세 부 2 과 이 종 삼
 지 방 행 정 주 사

82. 6. 22자 정직 1월처분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사건 82-100 : 82. 9. 29) 에 의하여 동일자로 감봉 3월로 변경함.

종 로 구 종 로 5, 6 가 동 김 공 하
 지 방 행 정 서 기

82. 6. 22자 해임처분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사건 82-107 : 82. 9. 29) 에 의하여 동일자로 정직 3월로 변경함.

<p>영등포구 근무를 명함.</p> <p>◎1982년 10월 29일자 제 549 호</p> <p>강남구수도관리과장 유 기 락 지방행정사무관</p> <p>내무국 근무를 명함. 경제기획원 <'88 올림픽 대비 관광 부문 종합계획 실무작업단> 파견근 무를 명함. (1982.10.30 ~ 1983.4.29)</p>	<p>◎1982년 10월 30일자 령 제 550 호</p> <p>종로구수도관리과장 황 병 철 지방행정사무관</p> <p>1982. 7. 2자 감봉1월 처분을 총 무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사건 82-42 : 82. 10. 14)에 의하여 동일 자로 전책으로 변경함.</p> <p>서울특별시장</p>
--	---